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3일,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3.)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의원)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가. 학교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학교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학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3 기준 28,954개소)을 추가하여 영유아도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영유아가 다니는 지자체 어린이집 456개소에서는 텃밭 및 미각 교육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별 텃밭·농촌체험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동 법의 학교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규정 신설

현행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도 별도의 보상이 준

재하지 않아, 학교로 하여금 창의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우수학교가 지정되는 경우, 우수학교 지정 사실 공고 및 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정된 우수학교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양한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별 법률에 우수학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교육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지원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2023년 기준 335개가 있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중 일부는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68개소 지정)을 통하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식생활 교육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18년 대학 식생활교육 교과과목 개설·운영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 등의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한 바 있음(안 제26조의3 제1항 관련).

그러나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이상 편성되지 않기 때문임.

최근에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유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안 제26조의3제2항 관련).

두 사업은 대학생의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지원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학교를 제외한 분야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학교 외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사회식생활 교육’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학교 외 분야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사회식생활 교육’으로 통칭하는 것이므로 해당 분야·계층에 대한 열거는 불필요한바, 안 제26조의4제2호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식생활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영양사 및 영양사의 법적 고유직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9월 11일 주간을 식생활 교육 주간으

로 지정하여, ‘식생활 교육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식생활 교육을 위한 법정기념일을 정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식생활교육주간(9.11주간)이 존재함. 따라서 “식생활 교육의 달”이 아닌 “식생활 교육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홍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명시하여 포함하는 등의 사항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고,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학교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사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조).
- 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함(제26조).
- 다.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6조 및 안 제26조의2).
- 라.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명시하여 포함함(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 마.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중 사회식생활 교육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의4).

바. 식생활 교육의 달에 관한 사항을 식생활 교육주간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함(안 제26조의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학교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학교”를 “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학교”를 각각 “학교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
으며,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
다.

안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
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
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안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학교</u> 및 <u>「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u> -----.	제2조(정의)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 ----- ----- ----- <u>학교를</u> ----.
제26조(<u>학교</u> 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생략)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u>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현행과 같음)	제26조(<u>학교</u>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u>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		<u>“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u> ③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 ----- ----- --. ④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 ----- ----- ----- -----.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	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우수 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제26조의3(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생활 체험 및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삭제> <u>제 26 조 의 3 (식 생 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u>육 프로그램의</u> <u>개발 및 보급</u> 2. <u>국가기관, 군부</u> <u>대, 기업 및 사</u> <u>회·종교 단체</u> <u>등에서의 사회식</u> <u>생활 교육</u> 3. <u>사회식생활 교</u> <u>육 전문인력의</u> <u>양성 및 활용</u> 4. <u>그 밖에 사회식</u> <u>생활 교육의 활</u> <u>성화를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항</u> 제26조의5(식생활 교육의 달) 국민 의 건전한 식생활 을 유도하고 식생 활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한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다.</u>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학교”를 “학교 및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학교”를 각각 “학교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 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u>학교</u> 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 <u>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u> <u>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u> <u>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u> <u>지원할 수 있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 <u>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u> <u>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u> <u>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u> <u>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 <u>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u> <u>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u> <u>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u> <u>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u> <u>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u> <u>있다.</u>	제26조(<u>학교 및 어린이집</u> 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 활 교육을 실시하는 <u>학교 및</u> <u>「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u> <u>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u> <u>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u> <u>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u> <u>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u> <u>활 교육 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u> <u>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u> <u>다.</u> ③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 -----. ④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 -----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u> <u>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u> <u>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u>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u> <u>육주간으로 한다.</u>